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교원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교육감 보고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35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 목 차 】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3.
3. 회부연월일 : 2025. 2. 1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 Ⅲ. 검토의견

현행 법령상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에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u>제20조의3(교육감에 대한 보고)</u><br><u>①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br><u>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u> |
| <u>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u><br>(생략) | <u>제20조의4(교원 개인정보의 보호)</u><br>(현행 제20조의3과 같음)                                                                                                                        |

교육감은 현행 법령상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사의 임용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교원의 임용권자에 해당하므로<sup>1)</sup>,

1) 「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원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발생하여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관련 규정상 교육감은 임용권자로서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직권면직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교육감에게 알림으로써 해당 교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sup>2)</sup>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장에게는 교원의 수업배제와 담임배제, 그 밖의 업무분장을 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고<sup>3)</sup>, 사립학교 교장에게도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사적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수업배제, 담임배제 등의 조치 권한이 주어지고 있지만,

개정안과 같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교육감에게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들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청주지법 2013. 3. 28., 선고, 2012구합1476

학교장이 당해 학교 소속 교원들에 대하여 담임교사로 배정할지 여부, 무슨 교과수업을 배정할지 여부, 그 밖의 업무분장 등 보직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전인격적 발달과 학습권 보장 등 교육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각 보직에 따른 직무 특성과 각 교원들의 인적요건, 희망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도록 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인의 병력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sup>4)</sup>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3자인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은 보고 시 교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sup>5)</sup>에 따라 교원의 질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더 큰 경우에만 보고를 허용하도록 엄격하게 판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고에 앞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4)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 5)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자해 및 타해 또는 치료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특정범죄경력<sup>6)</sup>이 있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3건의 「정신건강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sup>6)</sup>에 대하여

“과거 자·타해 전력이나 범죄전력을 근거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여 개인민감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사회 및 국내법 체계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자가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경찰이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을 본인 동의 없이 언론에 임의공개한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정보로서 특별히 더 보호돼야 할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사실의 공개는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본인이 승낙한 범위를 벗어나 국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다”고 하며

---

6) 「정신건강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6176호)  
「정신건강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7195호)  
「정신건강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8044호)

“정신질환을 포함한 모든 병력사항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민감 정보로 사건관계자의 동의 없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만일 공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186 |